

☐ 한 가지도 빠짐없이 신청서 내용을 작성해주세요.

※ 무상보급사업 약관 하단에 서명하여 신청서와 함께 꼭 동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무상보급사업 약관, 자동차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중빙서류 각 1부

유아보호용장구(카시트) 무상보급 약관

제1조(목적)이 약관은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 보급하는 유아보호용장구(이하 '카시트')에 대한 보급 기준, 처분, 보급 대상자간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급신청 등) ①재단은 카시트 무상보급에 관한 사항을 재단의 홈페이지 또는 언론 등을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

1. 재단은 카시트 무상보급 신청을 원하는 회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전자메일이나 기타 방법 등으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재단은 카시트 무상보급 사항에 대한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②재단이 제공하는 카시트 무상보급 서비스를 원하는 회원은 재단에서 제공하는 신청양식에 따라 필요사항을 기재하고 제시된 필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청자는 재단이 제시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무상보급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재단은 제3항에 의거 신청자의 무상보급 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순위에 의거 카시트 무상보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사실을 무상보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의거 통지를 받은 무상보급 대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⑥재단은 무상보급 대상자로 하여금 소요경비 지불 의무를 확인한 뒤 카시트 무상보급 대상자에게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이후 지체 없이 카시트를 전달하여야 한다.

⑦카시트무상보급 사업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3조(카시트 보급순위) ①카시트의 무상보급 대상자는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자동차 보유 가정 중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정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에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가정(차상위 의료급여, 자활급여, 장애수당, 한부모가정, 양육수당 중 하나 이상의 급여 수급권자 가정)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가정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 등급 이상 해당자(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인 자 또는 3급인 정신지체

인 또는 발달장애(자폐증)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가정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5. 입양된 영유아 자녀 가정. (양측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영유아만 해당)

6.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료 지원대상자 가정

7. 세 자녀 이상 가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의 경우 자동차 운전석 옆 좌석을 제외한 다른 좌석에 카시트 설치가 가능한 차종(3점식 벨트 설치 차량)에 한하여 선정한다.

③무상보급 신청자의 순위가 동일할 경우 자녀연령, 자녀 수, 자동차 배기량 등 재단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선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시트 무상보급 수량은 세대별 1대로 한다. 다만, 쌍둥이 일 경우에는 2대로도 할 수 있다.

제4조(비용)①무상으로 보급되는 카시트를 대상자에게 배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무상보급 대상자 부담으로 한다.

②무상보급 대상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카시트 반송, 대상자의 과실로 발생한 카시트의 교환 등에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대상자가 한다.

제5조(준수사항) 카시트 무상보급 대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제3자에게 매매·양여·교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무상보급 대상자가 이를 위반하였을 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무상보급 된 카시트를 반환하거나 제품평가액을 통해 카시트를 보상할 의무를 지닌다. 제품평가액은 한국감정원 등을 통해 평가하며 이 경우 제품평가액은 납품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개인정보 보호)①재단은 회원과 카시트 무상보급 대상자의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단, 회원과 카시트 무상보급 대상자가 게시판이나 전자메일, 채팅 등 온라인상에서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다른 사람이 수집하여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위험은 개인에게 책임이 있고 재단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7조(정보사용에 대한 동의)① 재단은 카시트 무상보급 대상자와 관련하여 해당 서비스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하여 대상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이를 수집, 이용할 수 있다.

②재단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③대상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대상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단, 재단은 관련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한 서비스 협력업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유할 수 있다.

④대상자는 재단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그 정보가 잘못된 경우 재단에 대하여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위 유아보호용장구 무상보급 약관에 동의합니다.

서명: _____